

정 관

사회 복지 법인 —————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정 관

제정	1998.	11.	21
개정	1999.	1.	29
	2000.	1.	27
	2000.	5.	23
	2001.	2.	8
	2005.	2.	24
	2006.	2.	9
	2009.	2.	12
	2013.	7.	18
	2019.	2.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회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회”라 한다)라고 한다.

② 이 회의 영문표기는 DaeJeon Council on Social Welfare로 하고, 약칭은 DJ·C·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 빌딩 805호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5.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6.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7.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8. 회원 상호간의 연락조정 및 협의
9.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10. 대전광역시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1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12. 사회복지자원 개발 및 모금에 관한 사항
13. 공동모금사업의 지원
1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위탁하는 업무
15. 복지위원 및 사회복지관계 위원회 등의 육성 및 연락
16. 종합사회복지관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사업

17.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18. 이 회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의사업 추진
19. 그 밖의 이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업무연계) ① 이 회와 중앙 및 타시·도사회복지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 회에서 민간복지 정책과 관련되는 주요사안을 결정·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각호에서 정하는 회원을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중 단체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
2.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3. 구사회복지협의회의 장
② 회원중 개인회원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하는 자

제8조(회원의 가입등) 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도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이 회는 회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임의탈퇴)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당연탈퇴)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연탈퇴 된다.
1. 회원으로서 자격상실
2. 사망
3. 해산 및 파산
② 제1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1조(회원의 제명 또는 징계)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이 회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
- ② 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정지) ① 이 회의 회장은 회원이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1년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이 회의 정관·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회원의 권리) 이 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15조(권리행사 방법) 이 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회원의 업무참여) 이 회 회장은 회원에게 주요정보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회원이 협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회원규정) 회원의 가입과 탈퇴, 의무의 이행과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8조(임원 및 정수) ① 이 회는 21인의 이사를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3. 이사(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 21인
- ② 이 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제19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중도 사임으로 인해 이사 정수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③ 회장은 선임된 부회장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에서 균형되게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
2. 구사회복지협의회장
3.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 및 보건의료계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하는 자
- ⑤ 감사중 1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에 준하여 선임한다.
- ⑥ 선임된 임원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부회장·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이사 또는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이 회의 임원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준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 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 회의 중요 정책과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잘못되었거나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사후조치도록 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24조(임원의 대우등)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기타 임원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이 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 하고,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 4 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26조(총회) ①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회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사무처의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8.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총회 소집등)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2월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가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1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대리인은 다른 회원 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단체 및 시설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요지·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10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 회는 회의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33조(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3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가입에 관한 사항
2. 회원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무처의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위·수탁시설 및 부설기관의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7. 법령, 정관 또는 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8.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임원 부담금에 관한 사항
10.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5조(이사회의 소집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2월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37조(서면결의등) <삭제>

제3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삭제>

제39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요지·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임원 전원이 인감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 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회장단회의) ① 이 회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② 회장단회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전문위원회

제41조(전문위원회) ① 이 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42조(자산의 구분) 이 회의 자산은 목적사업용 재산과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자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회의 경비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및 부담금, 기부금·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45조(회계의 구분등) ①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이 회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준한다.

제4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7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도 있다.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에 작성하여 매년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무처

제50조(사무처) ①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는 사무총장이 회장의 명을 받아 지휘·통할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51조(조직)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직원) ① 사무처의 직원은 일반직과 계약직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의 임용·인사·복무·징계·보수·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수익사업

제53조(수익사업) ①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과 이 회 정관 제4조 제18호에 의거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지원,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의 수익사업 및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기본재산) 임대사업

2. 출판사업

3. 조사·연구 등의 용역사업

4. 공연사업

5. 그 밖의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 9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54조(정관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55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재적인원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5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 회의 목적과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10 장 기초자치단체(구) 사회복지협의회

제57조(구 협의회) ① 이 회는 관할지역내의 구에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구 협의회의 관할구역, 소재지 및 구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공고방법

제58조(공고의 방법) ① 이 회가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회보에 신는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12 장 보 칙

제59조(준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60조(제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위·수탁 및 부설기관의 운영) ① 위·수탁 및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이 회의 정관 및 제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수탁 및 부설기관의 회계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 회는 위·수탁 및 부설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